

경제 활력대책 회의
19-20-2 (공개)



건설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2019. 8. 14.

관계부처 합동

순 서

□ 안건요약	1
I. 추진배경	4
II. 건설경기 동향과 전망	5
III. 정책 추진방향	6
IV. 건설산업 활력 제고방안	7
1. 현장 애로 해소형 규제 개선	7
2. 공사 全 과정 여건 개선성	11
3. 新 부가가치 지속 창출	18
V. 과제별 세부추진 계획	23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요약]

1. 그간 추진경과

- 우리 건설산업의 낮은 생산성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 및 개도국 추격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산업 혁신방안」 수립('18.6)
 - 200만명 규모의 건설 일자리를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일자리 개선대책」 발표('17.12)
- 건설산업 혁신은 업종간 경쟁을 가로막던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등 신속 추진 중('18.12, 법개정 → '21. 공공공사, '22. 민간공사 적용)
 - 임금직불제(공공 의무화, '19.6), 적정임금제(시범사업 20개소), 전자카드제 확대 등 일자리 개선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 중
- ☞ 최근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건설혁신 동력 저감이 우려되는 만큼,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통해 혁신동력 확보 필요

2. 활력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

- ① (규제 개선) 건설규제 중 안전이나 국민생활 관련 사항은 제외한 건설사업 일선 경영측면에서 애로요인 규제 총 26건 개선
 - ① (불필요한 비용 감소) 공사 도급계약 변경시 공사대장 통보*, 해외 건설 상황보고 등 관행적 통보내용을 대폭 간소화
 - * 도급금액 1억원 미만, 하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의 총사업비 변경시 통보 면제
→ 연간 6~7만건 통보 감소 예상(전체 통보의 9% 수준)
 - ② (경영여건 개선) 관급자재에 대한 시공 실적인정, 하도급대금 압류시 하수급인 보호 강화, 현장배치 기술자 요건 완화
 - ③ (여건변화 반영) 가설기자재 품질시험비 기준 마련, 사용 실적 없는 분야별 시공능력평가제 폐지, 하도급대금 보증서 교부기간 현실화

② (공사 여건개선) '가격산정→입낙찰→시공'의 공사 수과정에 있어 공사비 적정성 제고 및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적정이윤과 견실시공 보장

① (적정공사비 확보) 설계상 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산정체계 개선을 통해 제값 주는 원가체제로 개편

- * (표준시장단가) 실거래 차이가 큰 공종 우선개정, 실제 시공가격 반영 등
- ** (표준품셈) 사회변화에 따라 노후시설 유지보수 품셈 및 ICT 공사 품셈 마련

② (적정공기 보장) '공기산정 기준(훈령)'을 법제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세먼지·폭염 등의 경우 공기연장 기준·절차 등 명확화

③ (계약제도 개편)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19.1, 기재부)'의 본격적인 시행 등 공공공사 입낙찰 제도 선진화

- 기술경쟁 유도를 위한 종합심사낙찰제 확대(300억→ 100억 이상), 낙찰 가격평가 제도 개선('19.6)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

④ (불공정 입찰조건 개선) 공공기관의 입찰조건을 전수조사하여 발주자 업무 전가, 불명확한 과업지시 등 불합리 규정 개선

⑤ (보증체계 개선) 임금직불제 의무화('19.6)에 따른 체불 감소를 고려하여,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 인하

- 견실한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수수료 특례('19.5 도입)의 시행성과를 모니터링 후 추가 확대방안도 검토

⑥ (SOC 투자) 단기 집행 예정인 사업은 차질없이 완료하고, 철도 등 대규모 사업은 턴키방식을 적극 적용하는 등 조기 집행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4조원)」는 금년 내 대부분 기본계획 및 설계에 착수하고, 지역경제 활력제고 등 취지에 맞게 지역업체 참여 확대 검토

⑦ (우수인력 양성)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 취업알선*을 통해 우수 건설인력을 육성하고 정규직 채용까지 연계

- * 특성화고 활성화, 업계 채용수요와 훈련생의 희망을 고려하여 취업매칭 등

③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대규모 R&D로 스마트건설 핵심기술을 조기 확보하고 건설공정(설계·시공·유지관리)의 디지털화·자동화 추진

- ① (연구개발) 스마트 건설기술 R&D('19.6 예타통과, 2천억) 조속 추진하고, 스마트 유지·관리 R&D('19.11 예타신청, 1.6천억)도 후속추진

* 3-D 디지털 설계 기반 무인·원격 모듈화 시공(약 590억), 건설장비 자동화·통합관제, 드론측량(약 560억),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약 550억) 등

- ② (기술적용) 건설공사 전 공정에 스마트 기술 적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설계기준도 정립

* 전 공정에 스마트 기술을 종합 적용하는 패키지형 4건(양평-이천 고속도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등), 드론측량·장비자동화 등 특정기술 적용 22건

- ③ (스타트업 지원) 창업지원을 위한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내실화하여 '21년까지 입주기업을 50개로 확대

* ('18.9~'19.5) 14개 기업 입주 → ('19.6) 7개 기업 추가 입주(2단계 입주)

④ **(고부가가치 해외사업 확대)** 단순 도급 사업에서 벗어나 스마트시티 등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PPP) 진출 확대 추진

- ① (투자개발형 사업) PIS 펀드*를 조속히 조성하여 하반기부터 스마트 시티 등 고부가가치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해외수주를 적극 지원

* 모태펀드(1.5조원)의 모펀드(6천억원) 투자협약 체결(6.27) → 자펀드 조성추진

- 진출 여건이 양호한 국가를 핵심사업국으로 선정하여 우선 진출하고 사업 모델 개발도 추진

- ② (고위급 수주지원) GICC*, 정부차원 수주지원단 파견 등을 통해 신시장 개척 지원 및 주요 입찰 추진사업에 전방위적 지원

* 글로벌인프라협력컨퍼런스(9.3일~5일), 서울, 해외 발주처 및 금융기관 200여명

3. 향후 조치계획

- 규제개선 과제는 모두 금년 내 완료하고, 시범사업이 필요한 과제는 국토부 산하 공공공사에 우선 실시하여 조기 확산 추진

I. 추진배경

□ 건설산업 혁신방안 및 일자리 개선대책 발표

- 우리 건설산업의 낮은 생산성*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 및 개도국 추격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산업 혁신방안」 수립('18.6)

* 선진국 대비 우리 건설산업의 노동 생산성은 50% 수준

- 200만명 규모의 건설 일자리를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일자리 개선대책」 발표('17.12)

□ 혁신과제 신속 추진 중, 시장안착이 필요한 시점

- (건설혁신)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업종간 경쟁을 가로막던 업역 규제 폐지('18.12, 법개정 → '21. 공공공사, '22. 민간공사 업역규제 폐지)

- 경쟁을 통해 시공능력 강화하도록 등록기준 완화, 직접시공 확대 등 제도개선 완료, 업역폐지에 대비한 업종간 세부 시행방안 마련 중

* ('19.3) 직접시공 대상 확대(50억→70억 미만), 건설기술자 배치요건 강화 등 ('19.6) 등록기준 개편(자본금 70% 수준 하향, 담보금액 5~10% 상향) 등

- (일자리) 임금직불제(공공 의무화, '19.6), 적정임금제(시범사업 20개소), 전자카드제 확대, 불법 노무행위 처벌 강화('19.6) 등 차질없이 추진 중

- 임금직불제 확산, 적정임금제·전자카드제 제도화 등 후속조치 필요

□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혁신 동력 저감 우려

- 전년대비 일부 건설경기 지표*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

* 전년비 (수주) '19.1~6월 △4.5%, (기성) '19.1~6월 △5.3%, (투자) '19.2Q △3.5%

☞ 건설산업 혁신과제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통해 혁신동력 확보 필요

II. 건설경기 동향과 전망

[1] 국내 건설경기 → 전년대비 일부 건설산업 지표 위축추세

- '17년부터 건설수주*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건설기성과 투자도 '18년 이후 감소되는 등 '14년 이후 지속된 건설경기 호조세가 둔화 중

* (수주) ('15) 48.4%→('16) 8.1%→('17) △1.7%→('18) △2.2%→('19.6) △4.5%
(기성) ('18) △1.5%→('19.6) △5.3% / (투자) ('18) △4.3%→('19.2Q) △3.5%

- 건설 취업자수는 '19.1월 감소세 전환되었으나 최근에는 일부 계절적 요인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전년과 유사한 수준

* ('18)203→('19.1월)197→(2월)196→(3월)198→(4월)199→(5월)204→(6월)205만명

- 다만, 최근의 수주하락은 '16년 주택시장 활성화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지난 10년간 평균*대비는 25% 이상 높은 수준

* ('09~'18년 평균 건설수주액) 111.5조원 / '18년 건설수주 139.8조원

- 특히, '20년부터는 균형발전 예타면제 사업(24조원) 등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 됨에 따라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요인 존재*

* 노후SOC 투자 발표 후 '19.6월 CBSI(건설기업경기 실사지수)는 전월대비 17.5%p ↑

[2] 해외 건설시장 → 주력시장은 계속 축소, 기술경쟁은 가속화

- (수주부진) 해외건설 수주*는 저유가 등으로 인한 중동 발주 감소로 '16년 저점 기록 후 '17년부터 일부 회복 중이나 여전히 부진

* ('14) 660→('15) 461→('16) 282→('17) 290→('18) 321→('19.6) 119억불

- 세계 6위 수준의 수주물량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역·공종의 편중*으로 주력시장이 협소하여 유가 등 외생변수에 지나치게 민감

* 해외수주누계('65~'18) 중 중동·아시아 비중은 85.4%, 플랜트는 57.8%

- (경쟁심화) 스마트건설*, 금융투자 등 고부가가치 산업 경쟁으로 확산

* 3D모델설계(BIM), 스마트시티 등 ICT기반 건설 자동화 시장 대폭확대

Ⅲ. 정책 추진방향

비 전

건설산업 활력제고를 통한 건설혁신 가속화

3대 추진목표

현장 애로
해소형
규제 개선

공사 전 과정
여건 개선

新 부가가치
지속 창출

10개 세부과제

① 불필요한 비용 감소

② 경영 여건 개선

③ 사회적 여건변화 반영

④ 가격산정 단계 개선(적정공사비·적정공기 보장)

⑤ 입낙찰 단계 개선(공공입찰 선진화, 불공정입찰 차단)

⑥ 시공 단계 개선(보증체계 효율화, 상생협력 강화)

⑦ 적정 SOC 투자 확보

⑧ 유망 기업 및 인력 육성

⑨ 국제적 수준의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⑩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사업 확대

Ⅳ.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1 현장 애로 해소형 규제 개선

◇ 건설규제 중 안전이나 국민생활 관련 사항은 제외한 규제를 대상으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존치 필요성 여부 판단

⇒ ① 불필요한 비용 감소, ② 경영여건 개선, ③ 사회적 여건변화 반영 등 건설사업 일선 경영측면에서의 애로요인 총 26건 개선

[1] 불필요한 비용 감소

◆ 행정편의적인 통보제도를 개선하고, 업무 절차 개선 및 등록기준 특례 등을 통해 건설업계 부담 완화

□ (공사대장 통보) 現 도급계약 내용 변경시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
⇒ 改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총사업비 변경**은 통보 면제('19.12)

* (공사대장 통보) '18년 71만건 / (통보위반 행정제재) '18년 1.3만건

** 도급금액 1억원 미만, 하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 사업비 변경(전체 통보의 9%)

□ (해외건설 상황보고) 現 모든 해외사업에 대해 상황보고 의무화 ⇒
改 단기 해외공사의 보고 항목 및 횟수 간소화('19.下)

【사례】 15일 이내 단기 해외공사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수주활동, 계약체결, 시공 상황, 준공 등을 보고했으나(연 5회 이상), 앞으로는 **준공보고 한번**으로 같음

□ (건설업 양도·양수공고) 現 건설업 양도시 일간신문(소재지) 공고 의무화
⇒ 改 일간신문 또는 협회 홈페이지 공고 등 방식 다변화('19.12)

□ (사무실 공동사용) 現 건설기계대여업과 건설기계매매업 운영시 별도 사무실 필요 ⇒ 改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 사무실 공동 사용 허용('19.下)

□ (사무실 이전 특례) 現 소재지 변경 후 사무실이 등록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행정처분 ⇒ 改 30일 이내 적합한 사무실 이전시 인정('19.12)

[2] 경영여건 개선

◆ 업체에 대한 법적의무와 시공실적평가를 현실화하고, 자본금 심사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 (관급자재비 실적인정) 現시공능력평가지 관급자재비는 실적에서 제외
⇒ 改관급자재비도 시공능력평가의 실적에 반영('19.12)
- (하수급인 보호) 現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이 압류된 경우 하도급대금 보호 취약 ⇒ 改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도입, 합의 후 압류 발생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즉시 고지 의무('19.下)
- (자본금 심사기준) 現자본금 평가지 건축물은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여 반영하고 토지는 제외 ⇒ 改토지도 실질자산으로 인정('19.12)
- (자본금 특례) 現업종 추가시 자본금 특례는 제도 시행('10.2.11) 후 등록분만 적용 ⇒ 改특례 시행 전 업종 추가한 경우도 특례 적용('19.12)

* 특례 시행('10.2.11) 이전에 건설업을 추가 등록한 업체는 8,475개사로 전체의 43%

【사례】 토목공사업자(자본금 7억원)가 건축공사업(자본금 5억원) 추가 등록시 자본금 중복특례로 2.5억만 추가 필요, 다만 종전에는 '10.2.11 이전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는 특례를 못 받았으나, 앞으로는 특례 적용(총 9.5억원만 보유 필요)

- (현장배치 기술자 요건) 現기술인 배치시 종합공사는 동종 현장* 경력 요구 ⇒ 改소규모 공사(5억원↓)는 동일 직무분야로 경력요건 완화('19.12)

* 5억원 미만 공사시 배치 가능한 건설기술인 요건

- (전문공사) 동일 직무분야(예:토목)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종합공사) 동종 공사현장(예:주차장공사)에서 3년 이상 종사한자

【사례】 5억 미만 소규모 주차장 공사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주차장 시공 경력 3년 이상인 기술자만 현장 배치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토목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 기술자 배치 가능

[3] 사회 여건변화 반영

◆ 안전·품질비용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사비에 반영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법령 위반 소지 해소

□ (가설기자재 품질시험비) 現 품질시험을 의무화*하였으나, 시험비 산출기준이 없어 공사비 산정 애로 ⇒ 改 현장조사를 거쳐 기준 마련

* '17.7.1 강재파이프, 비계 등 가설기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시험항목·횟수 등 신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現 하도급계약시에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 改 보증서 발급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계약 후 30일內 교부('19.下)

□ (업체평가서류 간소화) 現 업무중복 확인을 전국 발주청·협회에 공문 조회⇒ 改 나라장터와 연계된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중복확인('19.10)

*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 활용 → 약 2주 기간 단축

□ (분야별 시공능력평가) 現 발주기관·업계는 분야별 평가 신청 가능 ⇒ 改 신청사례 없고 공종별(51개) 실적공시 도입으로 분야별 평가 폐지('19.下)

□ (건설기술인 자격 확대) 現 토목기사, 건축기사 등 337종 ⇒ 改 설비보전기능사와 최근 신설된 잠수기능장도 건설기술인에 포함('19.10)

□ (건설기계 기준 현실화) ① 콘크리트펌프 후부안전판 제거 허용, ② 항타항발기 발전기 장착 허용, ③ 콘크리트믹서트럭 수소발생장치 장착 허용 등 현실적 수요 반영('19.8)



① 콘크리트펌프 후부안전판



② 항타항발기 발전기



③ 콘크리트믹서트럭 수소장치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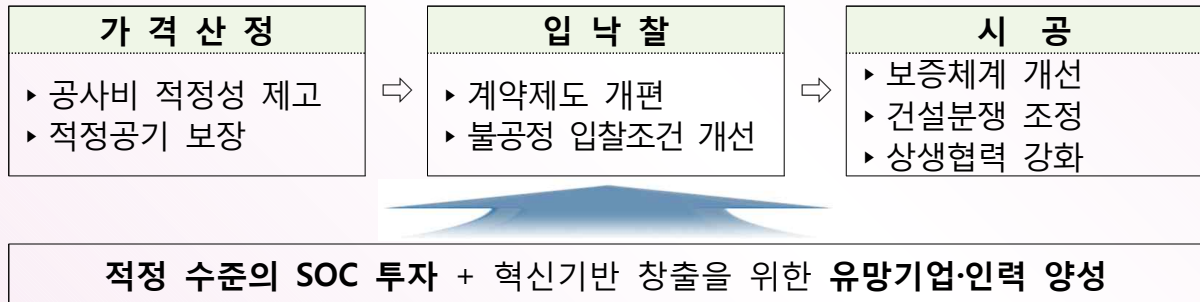
건설산업 규제 개선 과제 (총 26건)

※ 행정조치(8월), 법안발의(9월), 행정규칙(10월), 시행령(12월) 등
모든 규제개선과제는 **연내 조속히 조치 완료 예정**

연번	건의 과제 명	조치계획
1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	시행령개정('19.12)
2	해외건설 상황보고 개선	시행령개정('19.下)
3	양도·양수 공고 방법 개선	시행규칙개정('19.12)
4	건설기계사업 등록요건으로 사무실 공동사용 허용 여부	시행규칙개정('19.12)
5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허용항목 확대	시행령개정('19.12)
6	건설업 등록 심사기준 개선	행정규칙개정('19.10)
7	합병회사의 납입자본금 변경기간 부여	행정규칙개정('19.10)
8	소규모 공사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완화	시행령개정('19.12)
9	건설공사 관급자재비 실적 인정	법안발의('19.9)
10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 관련 하수급인 보호 방안 마련	시행규칙개정('19.12)
11	가설기자재 품질시험비 산출기준 신설	업무지침개정('19.10)
1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기한 설정	시행규칙개정('19.12)
13	전문분야별 시공능력평가제도 폐지	행정규칙개정('19.10)
14	콘크리트펌프 후부안전판 탈착 허용	행정조치('19.8)
15	항타항발기 발전기 장착 허용	행정조치('19.8)
16	콘크리트믹서트럭 수소발생장치 장착 허용	행정조치('19.8)
17	건설기술용역업체 평가서류 간소화	행정규칙개정('19.10)
18	건설기술인 근무처 인정 증명서류 확대	행정규칙개정('19.10)
19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 특례적용 확대	시행령개정('19.12)
20	위탁업무 관련 개인정보 요청근거 마련	법안발의('19.9)
21	국가기술자격 종목 확대 인정	규칙개정('19.10)
22	건설엔지니어링업 하도급 신고제도 개선	지침개정('19.8)
23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명확화	업무지침개정('19.10)
24	수중공사업 장비 등록기준 완화	시행령개정('19.12)
25	공기압축기 주행장치 탈착 허용	시행규칙개정('19.12)
26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술자 보유기준 개선	시행규칙개정('19.12)

2 공사全过程 여건 개선

- ◇ ‘가격산정→ 입낙찰→ 시공’의 공사全过程에 있어 공사비 적정성 제고 및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적정이윤과 전실시공을 보장
- ◇ 적정 수준의 SOC 투자와 혁신기반 창출을 위한 유망기업 및 우수인력 양성도 속도감 있게 추진



[1] 가격산정 단계

- (공사비 기준 개선) 설계상 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산정체계 개선을 통해 제값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
-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도록 시장가격을 최대한 반영하여 적기 개정하고, 변동 폭이 큰 노무비는 변동 즉시 반영
 - * 현재 총 1,862개의 공종을 대상으로 매년 약 370~380여개 공종은 시장가격 조사를 통해, 그 외 공종은 물가지수 적용을 통해 표준시장단가 산정 중
- (제·개정 주기 단축) 現 5개년 계획에 따라 전체 공종 순차 조사
 - ⇒ 改 현장 실거래가격과 차이가 큰 시급 공종*부터 우선 개정
 - *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組積)공사, 미장(美裝)공사 등 연내 개정
- (실제 시공가격 반영) 실제 시공단가, 생산자물가지수, 시중노임단가 등을 종합 고려한 산정체계로 개편(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 '19.10)
 - * 개선사례: 現 물가지수 산정시 공사원가(노무비+재료비+경비) 평균상승률 적용
 - ⇒ 改 최근 노임증가분의 적기 반영을 위해 공종별 노무비 비율 적용

< 개선사례 (예시 : 유로폼 거푸집) >

- ◆ 노무비 비중(81%)이 높은 유로폼 거푸집 공사를 대상으로 공종별 원가구성 비율과 원가별 상승률 적용시, 기존방식 대비 1.06%p 가격상승

		기존방식	개선방식
적용시점	'18년 하반기	'19년 상반기	'19년 상반기
적용단가	25,534원	26,434원	26,707원
가격상승률	-	평균 가격상승률 (3.53%)	원가별 비중 X 상승률 (노무비 비중 81% X 노무비 상승률 5.28%) + (재료바경비 비중 19% X 재료바경비상승률 1.67%)

- (표준품셈 개선) SOC 노후화,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과 같은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여 품셈제도 개선

- (유지보수 품셈) 노후시설 점검·보강 등 유지보수 공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소규모·긴급 공사 등 특성을 반영*한 표준품셈 마련('19.12)

* 야간작업, 가림막 설치 등 이용자 불편 최소화해야 하는 공사특성을 반영하여 연내 '유지관리 품셈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2년까지 품셈 마련 완료

** 조사 결과를 토대로 표준품셈에 공사 규모별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추진

- (ICT공종 품셈) 드론측량, IoT기반 현장관리 등 ICT기술을 활용한 공사의 가격기준(품셈) 산정계획 수립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 지원

* 국내 건설사의 기술수준, 해외사례 등을 감안한 산정계획 수립('19.12월)

- (적정공기 보장)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기산정기준(훈령)*' 법제화**, 구속력 부여('20.上 건진법)

* 주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준비/정리기간, 비작업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종별 공기기준 제시(예시 : 공동주택 골조공사 8일/층, 단, 동절기 9일/층)

** 건진법에 적정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시하고, 기존 훈령은 고시로 변경

- 공사규모 및 공종별로 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적정 공기 산정 및 관련 제도 정착 지원을 위해 기준보완

* 적정공기 논란이 큰 공공 청사, 학교 등 소규모 공사 적용 방안 검토·추진('19.12)

- 미세먼지·폭염 등 타 법령에 따른 공사제한으로 공기 연장 필요시, 연장기준·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발주청-시공사간 분쟁 최소화

[2] 입찰 단계

- (계약제도 개편)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19.1, 기재부 등)’의 본격적인 시행 등 공공공사 입찰 제도 선진화
 - (기술중심형 낙찰제) 기술경쟁 유도를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확대** 및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에 착수(‘19.9)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제도화
 - (종합심사낙찰제) 100~300억 구간으로 확대(현행 300억원 이상)하되, 저가수주 방지를 위해 **단가심사 기준 강화***
 - * 공종별 단가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단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경우 감점
 - (대안제시형 낙찰제) 1천억원 이상 고난이도 공사를 대상으로 공법·물량·시공계획 등에 대한 입찰자의 자유로운 제안 허용
 - (시공책임형 사업관리) LH시범사업을 토대로 시공사가 설계부터 참여하여 설계에 시공노하우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 검토(‘19.12)
 - (가격평가 합리화) 낙찰자의 과도한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평가요소를** 개선하고 안전·복지 비용을 가격평가에서 제외(‘19.6, 계약예규 개정)

< 주요 계약예규 개정사항 >

구 분	주 요 내 용
가격평가 합리화	○ (종심제) 균형가격 산정시 동일비율(20%)로 상·하위 입찰가격 배제 ○ (적격심사) 사회보험료·안전비용 등 가격평가 제외
공사비 적정성 제고	○ 구매규모를 고려한 자재단가 계상, 예정가격 작성시 주휴수당 계상 ○ 예비가격 범위(예:±2%) 등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 명확화

- (불공정 입찰조건 개선) 공공기관의 입찰 특수조건을 전수조사하여 발주자 업무 전가, 불명확한 과업지시 등 불합리 규정 개선
 - 국토부 산하기관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소공공공사로 확산** 및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 일제조사·시정지시 연례화** 검토
 - * 국책연구기관 등에 불공정계약 신고센터를 설치(‘19.下)하고 피해사례 접수
 - 부당특약 등으로 피해를 입은 건설사는 ‘**국가계약분쟁조정·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지원(국가계약법 개정)

< 주요 불공정 계약조건 개선필요 사례 >

구 분	개 선 필 요 사 항
입찰·계약단계	○ '최적의', '필요한' 등 불명확한 과업지시 후 지시변경 과다 ○ 이전 단계에서 누락된 내용(상세설계 등)을 후속사업에 포함
시공단계	○ 용지보상, 민원대응 등 발주자 업무를 건설사에 전가 ○ 서면교부(계약서 변경) 없이 추가 과업지시 후 비용 미지급 ○ '예산범위 내에서' 등 단서를 통해 적정 비용 미반영
사후관리	○ 과업종료 이후에도 사후 보완·관리를 무상으로 요청 등

[3] 시공 단계

□ (보증체계 개선) 수수료 인하, 보증범위 확대 등을 통해 업계 부담 완화

- (보증요율 인하) 임금직불제 의무화('19.6)에 따른 체불 감소를 고려하여,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 인하*

* '19.下 임금직불제 효과 분석 후, '20.上 수수료 인하(보증수수료 10% 내외)

- 건설한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수수료 특례* ('19.5 도입)의 시행성과를 모니터링 후 추가 확대방안도 검토

* 계약금·선급금·하자보증 수수료 10% 인하(7천여개 업체, 연간 170억원 부담감소)

- (사각지대 해소) 임의규정인 민간공사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 하여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분쟁 방지('19.12, 건산법 개정)

- 파산한 건설업자에 대한 보증거래 허용 요건 완화('19.5, 조합규정)

* (現) 면책채무 포함 전액 상환 전제⇒ (改) 신용도 등에 따라 보증거래 허용

< 공공공사 의무 보증 현황 >

	공공공사	민간공사
의무 가입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 입찰, 계약이행 보증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임의 가입	○ 공사대금 지급보증 ○ 건설기계대여계약 이행보증 ○ 선급금, 하자보수 보증 ○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 공사대금 지급보증 ○ 건설기계대여계약 이행보증 ○ 선급금, 하자보수 보증 ○ 입찰, 공사이행, 하도급계약이행 보증

- (보증제도 개편) 업역규제 개선 등 여건변화에 따른 보증상품·수수료 체계 개편을 포함한 '건설 보증제도 종합 개편방안' 마련 착수('19.7)

* 정부+3개 공제조합 공동 「공제조합 발전방안 연구용역('19.7~'20.1)」 추진

- (건설분쟁 조정) 건설업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여 불필요한 갈등 비용을 저감하기 위해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활성화 추진

* 분쟁조정 완료/신청건수 : ('16.) 6/42건 → ('17.) 3/39건 → ('18.) 3/33건

- 원활한 분쟁 조정을 위해 상설사무국 설치* 추진('19.12, 건설법 개정)

* 타 분쟁조정위원회 사례를 참고하여 위원회 운영방안 및 위탁근거 마련

- 위원회를 격월 단위로 개최하여 처리기간을 단축(6개월→4개월)하고, 실적에 따라 상호협력평가지 인센티브 부여

- (사업자간 상생협력 강화) 건설업 균형발전 및 공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전문 건설업자간 상생협력 구축

- (상호협력평가* 내실화) 원청→하청간 전문인력 지원(기술자 파견, 신기술전수 등)시 가점,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하도급시 우대('19.7)

* 상호협력실적을 평가하여 공공입찰·시평 평가에 반영(최대 3점 / 6% 가점)

- (하도급 적정성심사) 하도급사가 적정 수준의 대금을 받도록 저가 하도급 판정기준 강화*('19.3)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추가 개선 검토

*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 대금이 일정 수준(종전 60%→ 현행 64%)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 적정성을 심사하여 원도급사에 하도급 대금 증액 등 지시

- 지자체의 불법 하도급 제재현황을 공표하고,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건설산업 종합 정보센터(KISCON) 성능 개선('19.下)

* 불법행위 혐의 업체 통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 사실확인 절차 도입

- (간접비 지급 합리화) 총사업비 관리대상인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간접비 지급 요건과 범위, 산정기준 적극 검토

* 불가항력으로 공기연장시 추가 간접비를 발주기관이 부담하고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간접비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6.1일)

[4] 신속한 발주로 경기활성화 도모

◆ 단기 집행 예정인 사업은 차질 없이 적기에 완료하고, 중장기 SOC 사업도 사업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하게 추진

□ 단기 집행 예정인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

- ☞ '19년 국토부 예산 및 기금 현액 41.4조원 중 16.5조원을 하반기에 최대한 신속히 집행(추경예산 9월말까지 77% 집행)하고, 실집행률도 철저히 관리
- ☞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소관 사업(하반기 7.7조원)도 원활히 추진

○ (생활SOC) 도시재생 뉴딜*(1.2조원), 생활안전인프라(1.8조원) 등 생활 SOC 사업('19년 3.2조원)은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여 조기집행 독려

* 도시재생은 재정사업('19년 0.6조원)을 하반기 중 148개 착공, 46개 준공하고, 기금사업('19년 0.6조원)도 청주 연초제조창사업(0.1조원) 준공 등 본격시행

○ (공공주택) 6.7만호(1.4조원) 신규 착공* 등 공공임대 건설사업에 금년 말까지 총 5.1조원**을 지원하고, 신도시 30만호 지정 등 적극 추진

* 평택고덕 Aa6(1,600호, 286억원), 청주동남 A3(1,300호, 294억원) 등

** 국민임대(1.1조원), 행복주택(2.3조원), 공공임대(1.4조원), 영구임대(0.3조원)

○ (도로) 금년 내 안성-구리(0.3조원), 새만금-전주(0.2조원) 등 고속도로(1.4조원) 및 국도(1.8조원) 등 총 5.9조원의 도로 건설 및 관리사업 시행

○ (철도) 서해선(0.7조원), 중앙선(0.5조원) 및 철도시설 개량(0.7조원) 등 금년 내 총 5.2조원 규모의 철도건설 및 유지관리 사업 실시

□ 중장기 SOC 사업은 절차간소 등 신속히 추진

○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고, 대부분 금년 내 기본계획 및 설계 등 착수하여 사업속도 제고

*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산업 및 인프라 확충 사업(총 24.1조원, '19.1 발표)
→ 도로·철도 등 SOC는 15건(19.8조원)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역경제 활력제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검토 추진
- (도로)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7.2조원)을 금년 내 착공하고,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4.3조원)은 금년 내 설계 착수
- (철도) 대규모 철도사업은 턴키방식*을 적극 적용하고, 기본계획 발주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조기투자 유도
 - * 평택-오송 2복선화(3.1조원, '21.착공예정), 춘천-속초(2.1조원, '21.착공예정), 남부내륙철도(4.7조원, '22.착공예정) 등 검토
- GTX-A(3조원, '18.12착공), 신안산선(3.3조원, '19.下착공), GTX-C(4.3조원 '19.6 기본계획착수), 수서~광주선(0.9조원, '19.7 예타통과), 수색~광명(2.4조원 '19.7 예타착수) 등 수도권 철도사업도 신속 추진
- (노후SOC 관리) SOC의 선제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8조원씩 (국비 5조원 + 공공·민간 3조원) '20~'23년까지 4년간 총 32조원 투자

[5] 유망기업 및 우수인력 양성

- (유망 중소기업 육성) 중소건설업체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경영혁신 컨설팅 지원('19.8~12, 100개 업체 선정, 총 10억원 지원)
- (우수 건설인력 양성)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 취업알선을 통해 우수 건설인력을 육성하고 정규직 채용까지 연계
 - (특성화고)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능장이 도제식 훈련을 실시하고 정규직 채용 후 숙련공 멘토링 등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
 - (거점훈련기관) 협회는 업체의 채용수요를 제공하고, 훈련기관은 훈련생의 희망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취업 매칭 지원('19.7)
 - * 교육원-전문/설비협회 채용지원 협약('19.7), 7월 수료생부터 즉시 취업연계
- ☞ 일자리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내국인 채용확대 등 종합대책을 별도로 마련('19.10, 일자리 위원회 주관)

(1) 국제적 수준의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 ◇ 대규모 R&D 추진으로 스마트건설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건설공정(설계·시공·유지관리)의 디지털화·자동화 추진
- ◇ 스타트업들의 현장실증 지원사업, 공공기관별 시범사업 및 정부 보유 정보공개 등 통해 스마트 건설의 산업생태계를 조성
- ☞ 우리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25년까지 생산성·안전성 50% 향상)하고 창업·일자리 창출을 견인('25년까지 스타트업 500개 창업)

가. 스마트 건설기술 인프라 구축

□ 스마트 건설기술 R&D('19.6 예타통과, '20~'25, 약 2천억) 조속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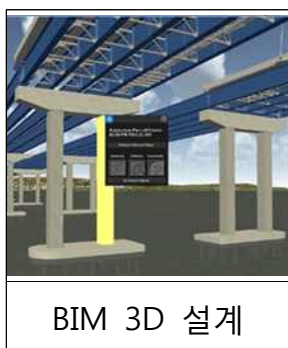
- ① 3-D 디지털 설계 기반 무인·원격 모듈화 시공(약 590억)
- ② 건설장비 자동화·통합관제, 드론측량(약 560억),
- ③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약 550억) 등

* (설계·데이터 관리) 기존 2-D 도면설계(중복작업 多)를 3-D 모델 설계로 대체, 설계·시공 통합관리 → 디지털화를 통해 설계·시공 공정 유기적 연계

* (시공) 3-D 모델 토대로 공장 제작 후 현장 조립(무인·원격시공), 토공량 실시간 모니터링(드론), 건설장비 실시간 통합관제 → 자동화를 통한 현장 공정 최적화

□ 스마트 유지·관리 R&D('19.11 예타신청, '21~'26, 약 1.6천억)도 후속추진

- ④ 3-D 디지털 모델 자동생성, ⑤ IOT·로봇 이용 점검·보수 등 기존 구조물에 대한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도 확보



나. 건설공사 全 공정에 스마트 기술 적용

□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3-D 모델로 설계하는 BIM 설계 우선 적용

- 이를 지원하기 위해 BIM 설계 라이브러리 공유플랫폼* 구축('19), BIM 설계기준 정립('21) 추진

* 설계시 공통요소들에 대한 라이브러리 사전구축·공유 → 중복작업 최소화

□ 기 발주된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기존 공정 외에 추가로 다양한 스마트 신기술을 시험 적용 하는 시범사업 26건 추진(~'25)

* 全 공정에 스마트 기술을 종합 적용하는 패키지형 4건(양평-이천 고속도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등), 드론측량·장비자동화 등 특정기술 적용 22건

** 시범사업 성과를 건설 산업계와 공유하고, 조기도입 유도(가칭 '스마트 인프라 건설 촉진법' 제정, '19말)

□ 아울러, 신규사업 발주시 처음부터 스마트 기술 적용을 고려하여 사업 전반을 계획하는 '스마트 턴키사업' 시범추진('20~, 1~2건)

* 대형·특수구조물 외에도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시 턴키발주 허용('19.2, 대형공사 심의기준), 기술형입찰시 스마트기술 평가항목 신설('19.4, 건진법 운영규정)

다. 스마트 건설 산업생태계 조성

□ 창업지원을 위한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18.9~'19.5 : 1단계*)를 내실화 하여 '21년까지 입주기업 50개를 목표로 단계적 확대

* ('18.9~'19.5) 14개 기업 입주 → ('19.6) 7개 기업 추가 입주(2단계 입주)

- 창업 1~2년차는 제품화 공동연구(업체·건설연)·시제품 제작 지원, 창업 3~4년차는 현장실증·벤처투자 매칭 등 맞춤형 지원('19.6~)

□ '03년 이후 축적해온 도로·하천분야 건설정보(사업·시설물관리 등) 전면 공개('19.7~) → 빅데이터 분석 등 사업화·연구 촉진 기반조성

* 1차로 건설정보 26종의 데이터 2.4천만건, 첨부파일(보고서 등) 14만건 공개('19.8) → '21년까지 첨부파일 610만건까지 전부 공개(개인정보 등 민감사항은 제외)

[2]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사업 확대

- ◇ 단순 도급 사업에서 벗어나 스마트시티 등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PPP) 진출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 확대
- ◇ 고위급 인프라 외교를 통해 하반기 주요사업 등에 대한 수주 지원을 강화하여 가시적인 성과도출 추진

가.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확대

- (금융지원 강화) PIS 자펀드*를 조속히 조성하여 하반기부터 스마트 시티 등 고부가가치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해외수주를 적극 지원

*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모태펀드(1.5조원)의 모펀드 6천억원 투자협약(6.27)

** 베트남 하노이 스타레이크 복합시설(3억불) 등 연내 5~6건 투자 검토

- (신남방·북방 펀드) 사업타당성(F/S) 조사 중인 인프라개발사업 투자를 집중 검토하여 연내 1호 사업 투자 추진

- (투자개발사업 진출전략) 진출 여건이 양호한 국가를 핵심사업국*으로 선정하여 우선 진출하고 사업 모델 개발도 추진

* (예시) 베트남→ '19년말 투자개발사업 관련법이 제정될 예정

- (국가별 전략) 핵심사업국의 인프라 개발 정책 및 시장현황 등을 고려하여 국가별 맞춤형 팀코리아 진출 지원 추진

* (예시) 인도네시아→ 현지 인프라 국영기업, 국영은행 등과 협업체계 구축

- (사업모델) 인프라ODA 사업을 활용한 투자개발사업 발굴, 교통 시설-상업시설 복합 개발 등 다양한 투자개발사업 모델 개발

나. 고위급 수주지원 활동 강화

- (GICC*) 해외 발주처를 초청, 핵심사업 수주지원 및 우리기업과의 1:1 비즈니스 미팅을 통한 네트워킹 및 신시장 개척 지원

* 글로벌인프라협력컨퍼런스(9.3일~5일), 서울, 해외 발주처 및 금융기관 200여명

- 신남방정책 인프라협력을 위한 한-ASEAN 고위급 인프라회의, 이라크 재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한-이라크 공동위 등을 병행 개최
- (고위급 수주지원) 고위급 외교행사 등을 계기, 수주지원단 파견을 확대하여 주요 입찰 추진사업 등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
 - 정상 순방시 인근국가와 연계하여 정상회담 성과를 극대화하고, 세계도로대회 등 다자회의* 계기 수주지원 활동 강화
 - * 세계도로대회(UAE, 10월),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베트남, 11월) 등
 - 정부간 기체결된 MOU에 기반, 국가별 협력분야에 대한 액션플랜을 도출하여 인프라 외교→사업수주로 연결되도록 후속조치 이행강화
 - * 예) 한-말레이시아 스마트시티 MOU('19.3) → 스마트시티 협력사업 공동발굴·기획

다. 수주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지원체계 구축) 건설기업, 금융기관 등과 해외건설 전략회의를 정기운영 하여 금융 지원방안 모색 등 기업애로 해소 밀착 지원
 - 공공기관-민간기업 동반진출을 위한 공공기관 공동 TF*를 운영하여 도시개발-교통인프라 등 연계 사업 발굴 및 패키지 진출 추진
 - * 국토교통부, KIND, LH·도공·공항공사 등 인프라 공공기관
- (시장개척 지원확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공사 수주교섭 지원을 확대*
 - * 시장개척지원사업 : 新시장 시장조사·예비타당성조사 지원(최대2억원)
 - 지원비율 : (現) 중소 70%, 중견 50% → (改) 최대 80% 및 전략사업 100%
 - 지원대상 : (現) 주요 건설공사·ENG 중심 → (改) 건축설계(국제현상공모 포함)
- (정보제공 강화) 법령 개정(해촉법시행령 '19.8)을 통해 해외주재관, 공공기관 등과 사업발주 전 정보 및 타당성 조사, 마스터플랜 등 공유
- (협력거점 확대) PPP 유망국, 핵심 진출국 등 6개국에 맞춤형 인프라 협력 거점*을 구축하여 현지 정보·네트워크 기능 강화
 - * 페루·UAE(既 개소), 우즈베크(5월 개소), 인도네시아(6월 개소), 베트남·케냐(7월 예정)

비전

2022년까지 『세계 5대 건설강국』으로 도약

'18.6
발표

건설산업 혁신방안

기술혁신

- ▶ 스마트기술 활성화
- ▶ 고부가가치 시장 확대
- ▶ 해외 건설 진출 지원

생산구조 혁신

- ▶ 직접시공 활성화
- ▶ 다단계 하도급 개선
- ▶ 업역·업종 개편

시장질서 혁신

- ▶ 부실업체 퇴출 강화
- ▶ 불공정 관행 개선
- ▶ 공공공사 견실시공

일자리 혁신

- ▶ 청년층 취업지원
- ▶ 강소기업 육성
- ▶ 전문인력 양성

혁신동력확충 및 시장안착지원

'19.8
발표

건설산업 활력 제고방안

규제개선

공사여건 개선

新 부가가치 창출

V. 과제별 세부 추진일정

세부 과제		조치사항	추진시기
◆ 규제 개선(7페이지 참조)			
1. 건설공사 통보제도 개선 등 14건		하위법령 개정	'19.12월
2. 건설업 등록 심사기준 개선 등 9건		행정규칙 개정	'19.10월
3. 건설공사 관급자재비 실적 인정 등 2건		법안 발의	'19.9월
4. 향타향받기 발전기 장착 허용 등 3건		행정조치	'19.8월
◆ 공사 여건 개선			
1. 가격산정 단계			
▪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행정규칙 개정	'19.10월
▪ 표준품셈 개선		계획 수립	'19.12월
▪ 적정공기 보장		건진법 개정	'20.上
2. 입찰찰 단계			
▪ 기술중심형 낙찰제		방안 마련	'19.12월
▪ 가격평가 합리화		계약예규 개정	'19.6월
▪ 기초금액 합리화		관계기관 협의	'19.8월~
▪ 불공정 입찰조건 개선		관계기관 협의	'19.8월~
3. 시공 단계			
▪ 보증체계 개선		건산법 개정	'18.9월
▪ 건설분쟁 조정		상설사무국 설치 추진	'19.12월
▪ 상호협력평가 내실화			'19.8월
▪ 하도급 적정성심사		KISCON 성능개선	'19.下
4. 적정 SOC 투자 확보			
▪ 단기 집행 예정사업		사업 추진	'19년말
▪ 중장기 SOC 사업		사업 추진	'19년말

5. 유망기업 및 양질인력 양성			
▪ 유망 중소기업 육성	경영혁신 컨설팅 지원		'19.8~12월
▪ 우수 건설인력 양성	종합대책 별도 마련		'19.10월
◆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1. R&D를 통한 핵심기술 확보			
▪ 스마트 건설기술 R&D	예타 통과, 조속 추진		'19.6월
▪ 스마트 유지·관리 R&D	예타신청		'19.11월
2. 건설공사 전 공정에 스마트 기술 적용			
▪ BIM 설계	라이브리리 공유플랫폼 구축		'19년말
▪ 시범사업 26건 추진	사업 추진		~'26
▪ 스마트 턴키사업	사업 추진		'20~
3. 스마트 건설 산업생태계 조성			
▪ 입주기업 확대			~'21년
▪ 도로·하천 건설정보 전면 공개			'19.8월
◆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사업 확대			
1.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확대			
▪ 금융지원 강화	PIS 자펀드 조성, 신남방·북방 펀드		'19.下
▪ 투자개발사업 진출전략	모델 개발		'19.下
2. 고위급 수주지원 활동 강화			
▪ GICC	해외 발주처 초청		'19.9월
▪ 고위급 수주지원	수주지원단 파견 확대		'19.下
3. 수주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지원체계 구축	해외건설 전략회의 정기운영		'19.9월/11월
▪ 신시장진출 디딤돌	해외공사 수주교섭 지원 확대		'19.下
▪ 정보제공 강화	해촉법시행령		'19.下
▪ 협력거점 확대	6개국 맞춤형 인프라 협력 거점 구축		'19.8월